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3-3
----------	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요구내용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삼봉산 권역 운영위원회 등 4곳에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 설 명 :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

나. 위탁 현황(4개 지구)

위탁 지구	위탁 기간(5년)	위탁기관	위 치	위탁 시설물(면적)
삼봉산 권역단위	2018.3.14. ~ 2023.3.13.	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(배짚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)	- 고제면 봉계리 85-1 - 고제면 봉계리 89	- 다목적센터 559.76㎡ 1동(사무실, 복합체, 체험실, 식당, 회의실, 체험객실) -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식
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4.6. ~ 2023.4.5.	(사)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	-신원면 괴정2길 50	- 사랑누리센터 453㎡ 1동(사무실, 헬스장, 아동센터 등) - 스포츠시설 1식, 공용주차장 1 식, 어린이놀이터 1식 등
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4.30. ~ 2023.4.29.	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	- 남상면 무촌리 656	- 다목적센터 980.03㎡ 1동(사무실, 헬스장, 대회의실 등) - 체육공원 1식, 공용주차장 1식, 어린이놀이터 1식 등
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5.30. ~ 2023.5.29.	가조권역 운영위원회	-가조면 마상리 316-25	- 커뮤니티센터 204.0㎡ 1동(사무실, 회의실) - 생태주차장(2,740㎡ 95대)

다. 위탁대상 사무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위탁 운영 관리

※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은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「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」 등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, 농촌교육,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교류, 지역민 화합 등의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

라. 운영계획

- 위탁기관 : 4곳(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, (사) 신원면 생활체육협회,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, 가조권역운영위원회)

○ 위탁내용

위탁 지구	위탁 기간(3년)	위탁기관	위탁업무	위탁비용
삼봉산 권역단위	2023.3. ~ (3년간)	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(배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)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 상 위 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23.4. ~ (3년간)	(사)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 상 위 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23.4. ~ (3년간)	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 상 위 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23.5. ~ (3년간)	가조권역 운영위원회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 상 위 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
※ 갱신기간 3년

마. 향후일정

- 위탁지구 위·수탁 계약 체결 : 2023년 2월부터 순차적 체결
- 해당지구 위탁운영 : 2023년 3월부터 순차적 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위탁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제1항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
- 「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」 제3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8조, 제27조
- 「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」 제10조
- 「위탁협약」 제4조

다. 민간위탁(갱신) 추진 계획 : 따로 붙임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민간위탁(갱신) 추진 계획

- ❖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추진 계획입니다.

I 기본 현황

- 사 무 명 :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위탁 운영 · 관리
- 갱신시설 : 4곳

위탁 지구	위탁 기간	수탁기관	소재지	주요시설
삼봉산 권역단위	2018.3.14. ~ 2023.3.13.	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(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)	-고제면 봉계리 85-1 -고제면 봉계리 89	- 다목적센터 559.76㎡ 1동(사무실 북카페, 체험실, 식당, 회의실, 체험객실) -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식
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4.6. ~ 2023.4.5.	(사)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	-신원면 괴정2길 50	- 사랑누리센터 453㎡ 1동(사무실 헬스장, 아동센터 등) - 스포츠시설 1식, 공용주차장 1 식, 어린이놀이터 1식 등
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4.30. ~ 2023.4.29.	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	-남상면 무촌리 656	- 다목적센터 980.03㎡ 1동(사무실, 헬스장, 대회의실 등) - 체육공원 1식, 공용주차장 1식, 어린이놀이터 1식 등
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5.30. ~ 2023.5.29.	가조권역 운영위원회	-가조면 마상리 316-25	- 커뮤니티센터 204.0㎡ 1동(사무실, 회의실) - 생태주차장(2,740㎡ 95대)

II 관리위탁(갱신) 운영(안)

- 위탁기간 : 3년(2023년 ~ 2026년) ※당초 5년 → 갱신 3년
- 위탁기관 : 해당 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(법인)
- 위 탁 료 : 무상
 - 위탁기간 중 관리위탁료는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
○ 위탁범위

- 위탁시설물의 유지관리(건물 및 기계 장비 등)
- 소규모 수리는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
-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

○ 평가 방법 : 그간 운영 경과 자체평가 시행 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관리위탁 갱신

○ 계약방법 : 수의계약

-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·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○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
- 「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」 제3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8조, 제27조
- 「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」 제10조
- 「위탁협약」 제4조 “관리 위탁기간 동안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관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”

Ⅲ 향후 추진 일정

- 2022. 12. : 위탁운영 결과보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3. 1. : 공유재산심의회 심의·의결
- 2023. 1. : 의회 심의·의결
- 2023. 3. ~ 5. : 수탁자 확정 통보

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

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관리수탁자)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,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<별표 4>의 내용에 따른다.

⑤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단, 사무의 민간위탁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[별표 4]

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(제10조 관련)

나. 수의에 의한 방식

1) 수의계약 대상

-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-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 -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 -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·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 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, 성장촉진지역, 농산어촌,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

제3조(시설물의 관리·운영)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.)와 위탁 방법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탁료)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관리수탁자의 의무) ① 관리수탁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리자 선임)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7조(계약의 해지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경비 지원 등)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제18조(관리위탁 기간의 갱신)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(2014.10.01)

1.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
2. 관리수탁자의 표시(조직, 예산·결산, 사업실적 등) (2014.10.01)
3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
4. 그 밖에 관리·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

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관리위탁재산의 관리·운영능력
2.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(2014.10.01)
3.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
4.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(호신설 2014.10.01)
5.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(호이동 2014.10.01.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1.>